

제190회 정례회
2001. 7. 10(火)

-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(안)

의회운영위원회

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(안)

1. 제안이유

- 의회기능의 활성화와 도민의 대표로서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시책발굴이나 제도개선 등의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연구활동등록은 의장에게 하되 의원 및 연구단체는 1년에 2개이상의 연구활동 참여에 등록할 수 없음.(안 제3조)
- 나. 연구단체등록 및 연구활동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되 심의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함.(안 제4조)
- 다. 연구활동비 지원 한도액은 의원 개인의 경우 100만원 이하, 연구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당 300만원 이하로 함(안 제8조)
- 라. 연구활동비는 연 2회로 분할지급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(안 제9조)
- 마.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제출토록 함. (안 제11조)

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(안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충청북도의회의원(의원연구단체를 포함한다)의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이 규칙에서 연구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 또는 의원연구단체(이하 “연구단체”라 한다)라 함은 의회발전 및 도정시책의 연구, 개발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처에 등록된 의원을 말한다.

②의원연구단체는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의원만이 아닌 5인이상으로 구성되고 의회사무처에 등록된 연구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등록) ①의원 및 연구단체가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의원 및 연구단체는 1년에 2개 이상의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등록을 할 수 없다.

③의원 또는 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계획서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부결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.

제4조(심의위원회) ①의원 및 연구단체등록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되 심의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.

②심의위원회 운영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.

③의원 및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무는 총무 담당관이 보좌한다.

제5조(심의위원회의 기능)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.

1. 연구의원 및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
2. 연구활동계획의 심의 및 과업부여
3. 연구결과보고서 심의 및 연구활동비의 지급여부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회의)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한다.

②정례회는 당해연도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결과 보고 심의를 위하여 매년 반기별로 개최하고 개최시기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③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.

④심의위원회는 회의개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 및 연구단체 대표를 참석토록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.

⑤심의위원회 위원은 자기의 연구계획 또는 연구결과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7조(연구활동 기간) 의원 또는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연구계획 승인의결을 의장이 통보한 날로부터 당해 연도 11월 말까지로 한다.

제8조(연구활동비 지원)①의장은 의원 및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 운영공통업무추진비중 일부를 한도액을 정하여 연구활동비에 지원할 수 있다.

②연구활동비 지원 한도액은 의원 개인의 경우 100만원 이하, 연구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당 300만원 이하로 한다.

③ 심의위원회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중 연구활동비 전체 한도액 범위내에서 연구단체의 등록, 연구주제, 연구활동비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의원 및 연구단체에 통지한다.

제9조(연구활동비의 지급기준등) ① 의원 또는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, 수용비, 공공요금, 용역비, 임차료, 급량비, 여비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제8조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연구활동비는 심의위원회의 연구계획승인 심의의결 통보를 한 때에 연구활동비 지원 총액의 50%범위 내에서 지급하고, 잔액은 연구활동 보고서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승인심사 결과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.

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 및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활동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.

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시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거나 조정 지급할 수 있다.

1.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
2.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
3. 연구활동보고서가 연구활동계획서의 내용에 현저히 미달한 때
4. 기타 위의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

제10조(연구계획의 변경등) ①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 또는 연구단체는 심의위원회의 심사, 의결을 거친 연구계획서의 연구주제 및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-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5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.
- ③ 의장은 제2항의 심의결과를 해당의원 및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1조(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)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의원 및 연구단체는 10월 31일까지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각 15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② 제1항의 연구활동비 정산서에는 「별표1」의 연구활동비 정산 기준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세부사항) 이 규칙 이외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의원(단체)연구등록신청서

2001. . .

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
아래와 같이 등록하고자 합니다.

1. 의원(단체)명 :

2. 연구과제명 :

3. 구성 의원 :

성명	소속 상임위원회	날인	비고

첨부 : 연구활동계획서 부

신 청 인 (인)
(단체의 경우 대표자)

충청북도의회의장 귀하

[별지 제2호 서식]

연 구 활 동 계 획 서

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
의거 2001년도 연구활동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연구의원(단체)명			
제 출 자 (단체의경우대표자)		의원(인)	
연구책임자		의원(인)	
연 구 내 용		주 제	
		목 적	
연구방법 및 세 부 계 획		<별 첨>	
연 구 활 동 비	총 액	원	
	산 출 내 역	<“별첨”구체적으로 기술할 것>	
기 타			

[별지 제3호 서식]

연구계획심사결과통지서

2001.

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
의거 귀 의원(단체)의 2001년도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
심사·의결 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연구과제명	
연구책임자	
심의의결 내용	

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

[별지 제4호 서식]

연구계획변경신청서

2001.

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
의거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연 구 활 동 의원(단체)명	
연구과제명	의원 (인)
연 구 계 획 변 경 내 용	
변 경 사 유	<구체적으로 기술할 것>
기 타	

신청자(단체)

(인)

충청북도의회의장 귀하

[별표 1]

연구활동비 정산기준

활동비목	정 산 내 역 기 준	비 고
인 건 비	<input type="radio"/> 인부를 고용하였을 경우 - 실제통상인금 × 고용일수	영수증 첨부
수용비, 공공요금, 급량비, 용역비, 임차료	<input type="radio"/> 실제로 구입한 물품을 세부내역별로 계산	내역서 및 영수증 첨부
여 비 (숙식 및 교통비)	<input type="radio"/> 연구의원 본인의 경우는 국내여비 지급 기준 <input type="radio"/> 인부를 고용하였을 경우 실제 1일 여비	내역서첨부 영수증 첨부
기 타	<input type="radio"/>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적용기준이 없는 경비는 통상적인 예에 의하여 산출	영수증 첨부